

#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8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2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##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에 따른 과징금
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에 따른 과징금

제5조 중 “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 기금관리관에게”를 “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</li> <li>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</li> <li>3. ~ 4. (생략)</li> </ol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에 따른 과징금</li> <li>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에 따른 과징금</li> <li>3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(기금의 관리) 기금 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) -----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----- -----</p>
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	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(회계관직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li>② (생략)</li> </ol>	<p>제11조(회계관직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1. ~ 3.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련 법 령(발췌)

## 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88조(과징금 처분)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## 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21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(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)할 수 없다.

1.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

2. 공동차고지(사업자단체,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건설과 확충

3.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09년 12월 7일

산업건설위원회

### I. 심사 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
2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3일
3. 상정일자 :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7차 산업건설위원회(2009. 12. 7)상정,  
심사, 원안가결

### 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권식)

#### 1. 제안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### **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연정수)**

-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조례 체계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**IV. 질의 · 답변요지 : 생략**

### **V. 토론요지 : 생략**

### **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 **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